



**문의·신청**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1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

**\*전화 신청**

- 전용센터(1523)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방문 신청**

- 이동통신사 대리점
- 주민센터



**새희망, 행복의 발견**  
**기초연금**

**기초연금 상담**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만 65세 이상의 행복**  
**그 이상을 채우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받으세요**



## 만 65세가 되신 어르신께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거룩한 마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부모님께  
조금 더 힘이 되어드리고자  
작년보다 더 오른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부모님의 노후가  
더욱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교통편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힘드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 뵙고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어떻게 받나요?

만 65세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전달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여 신청방법이나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2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3

신청이 접수되면 각 시·군·구에서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어르신들께도 개별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함께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라도 어르신들의 소득·재산 변동내역과  
매년 조정되는 선정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께  
다시 신청하시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어르신(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금일시금 수급자 포함)



단독가구  
137만원

2019년  
선정기준액



부부 2인 가구  
219.2만원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

## 얼마나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70%



단독가구 월 최대  
253,750원



부부 2인 가구 월 최대  
406,000원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부부 2인 가구 월 최대  
480,000원